한국항공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한국항공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가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①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.
 - ②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한다.
- 제4조(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)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·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처장을 한국항공대학교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.
 -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,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 부서는 기획처로 한다. 단, 공개대상정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.
- **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)**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 - 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
 - 2.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
 - 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- 4. 그 밖에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정보
 - ② 한국항공대학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, 공개 범위·주기·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 후 한국항공대학교 홈페이지 공개정보란에 작성·공표한다.
- 제6조(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)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.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- 2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- 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- 4.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

제정일: 2012.12.21

- 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6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-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- 7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- 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**제7조(정보공개업무 처리방법)**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한국항공대학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국항공대학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이 청구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한국항공대학교는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된다.
 - ④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한국항공대학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정일: 2012.12.21

-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항공대학교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⑥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) ① 법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항공대학교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항공대학교에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으로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연구협력처장, 정보지원처장하고,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.
- **제9조(심의회의 기능)** ①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정보공개책임관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본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 - ②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③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0조(심의회의 운영)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 한 것으로 본다.
- 제11조(기타사항) ①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한국항공대학교 실정에 맞추어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정일: 2012.12.21